

수상레저보험

□ 주요 보장내용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계약	배상책임조항(의무보험) - 수상레저 개인소유자용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에 또는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기본계약	수상레저기구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가 보험기간 중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수상레저기구에 장착된 표준기기, 장비품 포함. 단 연료, 식료품, 기타 소모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예시

- 보험기간 : 1년
- 목적물 : 개인 소유자용 모터보트(동력) 1대, 4인승 이하

보장명		보험가입금액(원)	자기부담금(원)
배상책임	대인	150,000,000	100,000
	대물	2,000,000	100,000
수상레저기구손해		1,000,000	100,000
영업보험료 합			94,600원

※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24년1월 기준)